

06_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것부터 시작하자

#1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 경고장 발송하기

만약 산업재산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침해자를 확인하고 침해 증거를 수집한 뒤,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침해 행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장의 존재는 형사적인 침해 행위나 손해 배상액 청구 소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 심판을 청구하기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는 특허청 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결은 추후 민사적 구제나 형사적 구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이러한 심판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 민사적 구제 방법 이용하기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는 앞서 언급한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과 집행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권리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가처분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생산 및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구제 방법이 됩니다.

#5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권한 없는 무단 실시: 침해자가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산업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사용한 경우입니다.
-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침해자가 산업재산권 침해를 의도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한 경우입니다.
- 현실적인 손해 발생: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행위와 권리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산업재산권의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 회복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적 구제 방법, 재판 외의 구제방법(ADR) 등이 있습니다.

#6

※ 국내의 재판 외 구제방법(ADR) 처리 과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구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침해된 특허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은 신청 절차가 간편하며,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 분쟁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을 말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됩니다.

#8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판결을 할 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세 가지 손해를 고려하는데, 이를 손해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손해삼분설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라는 세 가지 손해를 고려하게 됩니다.

#9

※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침해 행위로 인해 특허권자 등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이익이 손실되는 것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의 제거나 방지 를 위해 지출한 비용, 침해품의 조사를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 대리인 비용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실인 일실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수량이 감소하여 잃은 일실이익, 침해로 인해 권리자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어 발생한 일실이익, 침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여 실시료 수입이 줄어든 경우 등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10

※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특허권 침해 행위로 인해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고소 사건 종결 이후에도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1

권리를 침해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권리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 권리범위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

지식재산권자에게는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이 권리의 범위는 해당 지식재산권이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권리범위 해석은 법적 분쟁의 주요 과제로서, 특정 지식재산권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특정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침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권리범위 해석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범위가 명확히 해석되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

※ 특허청구범위 기준이 가지는 원칙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은 특허의 범위를 해석할 때, 특허청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라도, 권리범위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4

※ 디자인권의 침해란?

디자인권의 침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5

※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조항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유사한 디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16

※ 디자인권이 침해당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공보에 개시된 등록디자인과 법적 다툼의 대상물에 대한 확인대상 디자인을 특정하고, 두 디자인을 비교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관찰 또는 요소별 관찰을 통해 판단되며, 주어진 디자인들이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심미적인 감각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17

※ 상표권의 침해란?

상표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침해됩니다. 표장은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표는 구체적으로 표장을 가리킵니다.

#18

※ 상표권의 권리범위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법」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조항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해 결정된다.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상표의 범위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

※ 저작물의 침해 여부 판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이용되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 의심 저작물과 원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심되는 대상물은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의심되는 대상물을 제작한 사람은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저작권 침해(표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